의안번호	제 315 호			
의 결	2023년	월 일		
연 월 일	(제	회)		

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노금식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5월 31일

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

(노금식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15 발의연월일 : 2023년 5월 31일

발 의 자: 노금식, 최정훈, 김성대,

오영탁, 이옥규, 이태훈,

임영은

1. 제정 이유

O 충청북도 시·군 각 읍·면·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- O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(안 제1조~제2조)
-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O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O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O 지도·감독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~제7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 한 특별법」
- 나. 관련부서 협의: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와 협의함.
- 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라. 조례안예고 : 2023. 6. 2. ~ 2023. 6. 7.(5일간)

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·군 각 읍·면·동에 설치된 주민자치 회의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 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주민자치"란 주민이 지역 의제의 발굴, 공론,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.
 - 2. "주민자치회"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읍·면·동 단위로 설치되고,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 행하는 조직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주민자치 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을 수립 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시·군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, 주민자 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지원 사업)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
- 2.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3.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
- 4.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
- 5.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보조금 지원 등)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시·군 또는 주민자치 운영단체 등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6조(지도·감독)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홍보) 도지사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.
- 제8조(포상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자치회 위 워 및 도민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 - 1.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
 - 2. 도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지방자치법

-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(생략)
 - 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 - 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 - 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· 운영 및 관리
 - 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 - 라.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 - 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・운영
 - 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 - 사. 묘지・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・관리
 - 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 - 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 - 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 - (이하 생략)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 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- 제184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 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, 이를 위 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- ② 국가나 시·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언·권고 또는 지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·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

- 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- 제28조(주민자치회의 기능)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
 - 2.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
 - 3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
- 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, 구성,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 범적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 시군·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실현과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
3. 관련조문

○ 도지사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,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(안 제4조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주민자치교육 및 역량강화 48,000천원
-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개발 9,000천원
- 주민자치회 교류사업 8,000천원
-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55,000천원

나. 추계 결과 : 연간 120,000천원,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600,000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(자체재원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	계
세 출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120,000	600,000
교육 및 역량강화	48,000	48,000	48,000	48,000	48,000	240,000
프로그램 개발	9,000	9,000	9,000	9,0000	9,000	45,000
민간교류사업	8,000	8,000	8,000	8,000	8,000	40,000
활성화 지원	55,000	55,000	55,000	55,000	55,000	275,000